

허가 등의 수수료 (제65조제1항 관련)

허가 등의 대상	수수료
1. 가스도매사업의 허가	12만원
2. 일반도시가스사업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	12만원
3. 도시가스충전사업,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또는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의 허가	2만5천 원
4. 변경허가	2만5천 원
5. 허가증 재발급	3만원